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6
----------	-----

제출년월일 : 2000.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자긍심과 대학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 연구업무를 활성화하여 내수면 어업의 안정적 산업육성과 어자원조성 및 생태계 보존과 대외인지도 및 위상 정립으로 경쟁력 강화와 광범위하게 시설 관련 농업에 대하여 연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및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 음성시설채소 시험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명칭변경

현 행	변 경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을	⇒ 충북과학대학으로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을	⇒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로
·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을	⇒ 음성시설농업시험장으로

## □ 근거법령 : 따로 붙임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의 제목을 “충북과학대학”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충북과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을 “음성시설농업시험장”으로 한다.

제4장 제6절의 제목을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을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시험장은”을 “연구소는”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을 “(소장)”으로 하고, 조문중 “시험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을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으로 한다.

제51조중 “시험장장”을 “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 1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잠사균이시험장·종자생산시험장의 명칭과 위치표중 명칭란의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을 “음성시설농업시험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13조 (생략)		제1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3장 제1절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제3장 제1절 <u>충북과학대학</u>		
제14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u> 을 설치한다.		제14조(설치)① _____ _____ _____ _____ <u>충북과학대</u> <u>학(이하 "대학"이라 한다)</u> 을 설치한다.		
② (생략)		② (생략)		
제15조 ~ 제23조 (생략)		제15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특화작목시험장 등) ①기술원에 충청북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포도시험장, 단양마늘시험장, <u>음성시설채소시험장</u> 을 둔다.		제24조(특화작목시험장등)① _____ _____ _____ _____ <u>음성시설농업시험장</u> 을 둔다.		
②~③(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 ~ 제48조 (생략)		제25조 ~ 제48조 (현행과 같음)		
제4장 제6절 <u>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u>		제4장 제6절 <u>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u>		
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u> 을 설치한다.		제49조(설치) ① _____ _____ _____ <u>충청</u> <u>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u>		
②시험장은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②연구소는 _____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잠잠) <u>시험장에 잠장을 두고, 잠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제51조(소관사무) <u>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p> <p>[별표1]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잠사균이시험장·종자생산시험장의 명칭과 위치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옥천포도시험장</td> <td>옥천군 관내</td> </tr> <tr> <td>단양마늘시험장</td> <td>단양군 관내</td> </tr> <tr> <td><u>음성시설채소시험장</u></td> <td>음성군 관내</td> </tr> <tr> <td>잠사균이시험장</td> <td>청주시 관내</td> </tr> <tr> <td>종자생산시험장</td> <td>진천군 관내</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옥천포도시험장	옥천군 관내	단양마늘시험장	단양군 관내	<u>음성시설채소시험장</u>	음성군 관내	잠사균이시험장	청주시 관내	종자생산시험장	진천군 관내	<p>제50조(소장) <u>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u> _____</p> <p>제51조(소관사무) <u>연구소장은</u> _____</p> <p>[별표1]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잠사균이시험장·종자생산시험장의 명칭과 위치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_____</td> <td>_____</td> </tr> <tr> <td>_____</td> <td>_____</td> </tr> <tr> <td><u>음성시설농업시험장</u></td> <td>_____</td> </tr> <tr> <td>_____</td> <td>_____</td> </tr> <tr> <td>_____</td> <td>_____</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_____	_____	_____	_____	<u>음성시설농업시험장</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명 칭	위 치																								
옥천포도시험장	옥천군 관내																								
단양마늘시험장	단양군 관내																								
<u>음성시설채소시험장</u>	음성군 관내																								
잠사균이시험장	청주시 관내																								
종자생산시험장	진천군 관내																								
명 칭	위 치																								
_____	_____																								
_____	_____																								
<u>음성시설농업시험장</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근거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4조 (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5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고등교육법

제18조 (학교의 명칭) ①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학교의 명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